

##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증권선물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또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인이상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2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외에 정례회의”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증권선물위원회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로 또한 “각호”는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단 발언위원명은”을 “다만, 발언위원명

은”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요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회의개회·정회와 폐회의 일시
2. 의안 제목
3. 출석 위원의 성명
4. 주요 발언내용
5. 표결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5항 중 “단, 국회”를 “다만, 국회”로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제8항 중 “당해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안건의 공개) ①위원회의 안건은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부적절한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②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③비공개 안건은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고, 일정 기간 비공개 안건은 그 기간이 경과한 연도의 말에 일괄 공개한다.

④위원회 안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안에 소관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11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의1”을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의2”로, “동항”을 “같은 조항의”로, “내지 제3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증권선물위원회”를 “위원회의”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을 붙임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붙임 2와 같이 개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u>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u>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증권선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u>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u>」----- <u>증권선물위원회</u>----- ----- -----.</p>	<p>○ 목적 조항에서 약칭을 삭제</p>
<p><b>제2조(위원회의 구성)</b> ①<u>위원회</u>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다음 <u>각호</u>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p> <p>1. ~ 3. (생략)</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제1항 각호의 <u>위원</u>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p>	<p><b>제2조(위원회의 구성)</b> ①<u>증권선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u>각 호</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u>위원</u> <u>중</u>-----.</p>	<p>○ 제1조의 약칭을 제2조로 변경, 띄어쓰기 반영</p> <p>○ '위원장' 약칭 신설, 띄어쓰기 반영</p>
<p><b>제3조(위원장)</b>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u>통할</u>한다.</p> <p>② (생략)</p>	<p><b>제3조(위원장)</b> ①----- ----- <u>총괄</u>-----.</p> <p>② (현행과 같음)</p>	<p>○ '통할'을 법과 동일하게 '총괄'로 변경</p>
<p><b>제4조(회의의 소집)</b> ① <u>위원회의 회의</u>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p>	<p><b>제4조(회의의 소집)</b> ① <u>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u>----- -----.</p> <p>②----- -----</p>	<p>○ '회의' 약칭 신설</p> <p>○ '위원' 약칭 신설</p>

<p>2인이상의 <u>위원</u>의 요구가 있거나 <u>위원장</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p>	<p>-- <u>위원회의 위원</u>(이하 “<u>위원</u>”이라 한다) 2인 이상-----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위원회</u>는 제2항의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외에 정례회의에 부의가 예정된 안건 등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논의를 위하여 <u>간담회</u>를 개최할 수 있다.</p>	<p>④----- <u>회의</u>----- -----.</p>	<p>○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문구 삭제</p>
<p>⑤ (생략)</p> <p>⑥ 제4항의 <u>간담회</u>는 <u>증권선물위원회</u>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u>위원</u>----- --.</p>	<p>○ ‘위원’ 약칭 반영</p>
<p><b>제5조(의결)</b> ① <u>위원회의 회의</u>는 위원 3인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⑤ (생략)</p>	<p><b>제5조(의결)</b> ① <u>회의</u>----- -----.</p> <p>②~⑤ (현행과 같음)</p>	<p>○ ‘회의’ 약칭 반영</p>
<p><b>제8조(의사록)</b> ① <u>간사</u>는 <u>위원회의 회의</u>에 관하여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b>제8조(의사록)</b> ①----- <u>회의</u>----- <u>각호</u>-----.</p>	<p>○ ‘회의’ 약칭 및 띄어쓰기 반영</p>
<p>1.~3. (생략)</p> <p>4. 회의사항(<u>단 발언위원명은 “위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u>)</p>	<p>1.~3. (현행과 같음)</p> <p>4.----- <u>다만, 발언위원명은</u> ----- -----</p>	<p>○ 단서 표현을 ‘다만’으로 수정</p>
<p>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②(생략)</p>	<p>5. 그 밖에 <u>위원장</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현행과 같음)</p>	<p>○ 개정안 제3항제6호와 동일하게 규정</p>
<p>③ <u>간사</u>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속기록을 근거로 <u>주요내용을 요약한 의사록</u>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u>-----.</p>	<p>○ 의사록 작성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증권선물위원회의 각종 정책 결정과정의 공개범위를 확대</p>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접수된 속기록은 비공개로 한다. 단,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⑥증권선물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속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금융시장 안정이나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해부분의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⑦ (생 략)

⑧제7항에 의한 의사록은 회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다만, 당해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공

1. 회의개회·정회와 폐회의 일시

2. 의안 제목

3. 출석 위원의 성명

4. 주요 발언내용

5. 표결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현행과 같음)

⑤-----  
-----  
다만, 국회-----  
----- 위원회  
-----.

⑥위원회-----  
-----  
-----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위원-----

하고 명확히 함(금융행정혁신위 권고)

○ 단서 표현 정정, 위원회 약칭 반영

○ 위원회 약칭 반영

○ ‘당해’(불명확하고 불필요한 용어) 삭제

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안건의 공개)** ①위원회의 안건은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부적절한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②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의 모든 상정 안건을 원칙적으로 공개.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부적절한 정보는 삭제하고 공개. 또한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최대3년의 기간 내에서 비공개토록 함(금융행정혁신위 권고)

<p><b>제11조(의안의 제의 및 작성) ①~②</b> (생략)</p> <p>③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u>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u>에서 규정한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u>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의1 제2항</u>(법규 등에서 심사·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u>동항</u>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내지 <u>제3항</u>을 준용한다.</p>	<p>③비공개 안건은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 <u>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고, 일정 기간 비공개 안건은 그 기간이 경과한 연도의 말에 일괄 공개한다.</u></p> <p>④위원회 안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u>의안에 소관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한다.</u></p> <p><b>제11조(의안의 제의 및 작성) ①~②</b> (현행과 같음)</p> <p>③----- 「<u>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u>」 ----- ----- 「<u>금융위원회 운영규칙</u>」 ----- <u>제7조의2</u>----- ----- <u>같은 조항의</u> ----- ----- <u>· 제3항</u>-----.</p>	<p>○ 법률명칭 표기방식 적용, 「<u>금융위원회 운영규칙</u>」 개정에 맞춰 조항번호(7조의1) 변경</p>
<p><b>제13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임등)</b> (생략)</p> <p>1.~3. (생략)</p> <p>4. <u>증권선물위원회</u> 소송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p> <p>5.<u>기타</u> 단순·반복적인 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p>	<p><b>제13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임등)</b>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u>위원회의</u> -----</p> <p>5.<u>그 밖에</u>-----</p>	<p>○ ‘위원회’ 약칭 반영</p> <p>○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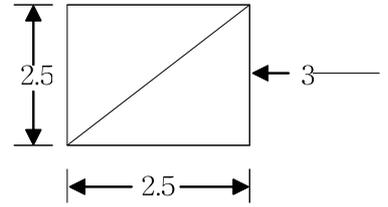
##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위 임 사 항	관 계 법 규
<b>1. 증권감독 관련사항</b>	
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또는 과징금 관련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제2항, 제432조제2항
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필요여부 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3조제1항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8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금융위 조치의 요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20호
라. 증권·파생상품 관련 거래소, 협회 및 감독원장에 대한 위탁사무의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제4항
<b>2. 금융실명제 관련사항</b>	
가.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 등 요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외국거래소 등에 대한 거래정보 등 제공의 사전승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다. 거래정보 등 요구 표준양식 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라. 외국금융감독기관에 대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관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b>3. 회계감독 관련사항</b>	
가.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접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나. 감사인의 사업보고서 접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붙임 2 >  
 (별지 제1호 서식)

공 개\*

\* 공개, 비공개, 3년 비공개, 1년 비공개 등 기재



7cm

의안번호	제 호	1	의 결 사 항
의 결	. . .	2	
연 월 일	(제 차)		

Horizontal dimensions: 3.5, 5, 0.8, 1

2

○ ○ ○ ○ ○ ○ ○ ○ ○ ○ ○ ○ ○ ○ ○ ○ 규정안

2.5

2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1

4

2	제 출 자	
1.2	제출 연월일	. . .

Horizontal dimensions: 3, 6.5

\* 제명은 20point, 부제는 18point, 나머지는 15point

1. 보고주문

2. 보고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

가.

나.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연 락 처		



1. 보고주문

2. 보고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

가.

나.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연 락 처		